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90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0.

발 의 자 : 이해식 · 허 영 · 박상혁
윤준병 · 한민수 · 문진석
박용갑 · 조정식 · 김영진
서영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. 이는 법률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.

그런데 금연구역 인근 차도에서의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, 지방자치단체가 차도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 해석상 혼선이 있는 상황임.

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규정하여 기존 구역에 더해 간접흡연 영향권에 있는 일정 거리 내의 실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

있도록 하며, 이 경우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(안 제9조제7항).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7항 중 “장소를”을 “장소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(일반 공중의 통행·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)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설치 기준·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① ~ ⑥ (생 략)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<u>장소</u> 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장소 및 그 경계선 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(일반 공중의 통행·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)을----- ----- 이 경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 내표지를 설치하고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 며, 설치 기준·방법 등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⑧ · ⑨ (생 략)	⑧ · ⑨ (현행과 같음)